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이종배·김승수·임이자

박덕흠 • 성일종 • 이종욱

강승규 · 서천호 · 송석준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

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 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
	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
	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
	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
	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
	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
	<u>행한다.</u>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
	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
	호 • 제1호의2 • 제2호 및 제95
	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

한다)의 범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